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**변경 사유** : ①3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
3등급(다소 높은 위험) → 2등급(높은 위험)

②제5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③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20. 5. 8.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표지			
-	투자위험등급 변경	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	<b>2 등급(높은 위험)</b>
요약정보			
투자위험등급	투자위험등급 변경	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	<b>2 등급(높은 위험)</b>
투자비용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주석 오기 정정	-	<u>2020.04.14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 익률)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04.14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9. 30 기준	<u>2020. 3. 31 기준</u>
오기 정정	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오 기 정정	-	<u>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중 동 펀드 해당 클래스 내용 만 기재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9. 30 기준	<u>2020. 3. 31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9. 30 기준	<u>2020. 3. 31 기준</u>


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오	-	<u>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중 동 펀드 해당 클래스 내용만 기재</u>
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정로별 특징	기 정정		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	모투자신탁의 주요 대상국가의 현황	-	<u>업데이트</u>
1)투자전략	트		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	3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	표준편차 : 12.03% 투자위험등급 : 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	<u>표준편차 : 15.34%</u> <u>투자위험등급 : 2 등급(높은 위험)</u>
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위험등급 변경 내역	-	<u>2020.5.8 : 3 등급 → 2 등급</u> <u>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익률 변동성이 15%초과 ~25%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3 등급에서 2 등급으로 변경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04.14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	납입요건 <u>가입기간 5년 이상,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</u> <u>가.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u> <u>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) 중</u>
나. 과세			
2)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		

---

**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  
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**

공제제도	공제제도
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 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 는 금액을 세액공제	<b>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 참 조</b>
- 종합소득금액 4,000 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 득만 있는 경우) 일 경우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	
-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 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 간 저축금액 중 3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	
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 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 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 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 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 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 서 제외됩니다.	
※ 지방소득세 별도	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04.14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04.14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04.14 기준</u>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9. 30 기준	<u>2020. 3. 31 기준</u>
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주소 업데이트	-	<u>업데이트</u>
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	주소 업데이트	-	<u>업데이트</u>

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

종합소득금액 (총 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12%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	

※ 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기한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  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